

XR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사업 (실증, 마케팅) 상시공고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에서는 「2023년도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매출증대 및 XR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XR 부품의 제작 후 성능·사업성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제공
- XR 기업의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매출향상

□ 사업내용

- XR 디바이스와 연동 가능한 맞춤형 부품의 제작 및 실증 기회 제공
- 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특허출원, 기술, 제품 인증 수수료 지원 등

□ 사업기간 : 협약일 ~ 1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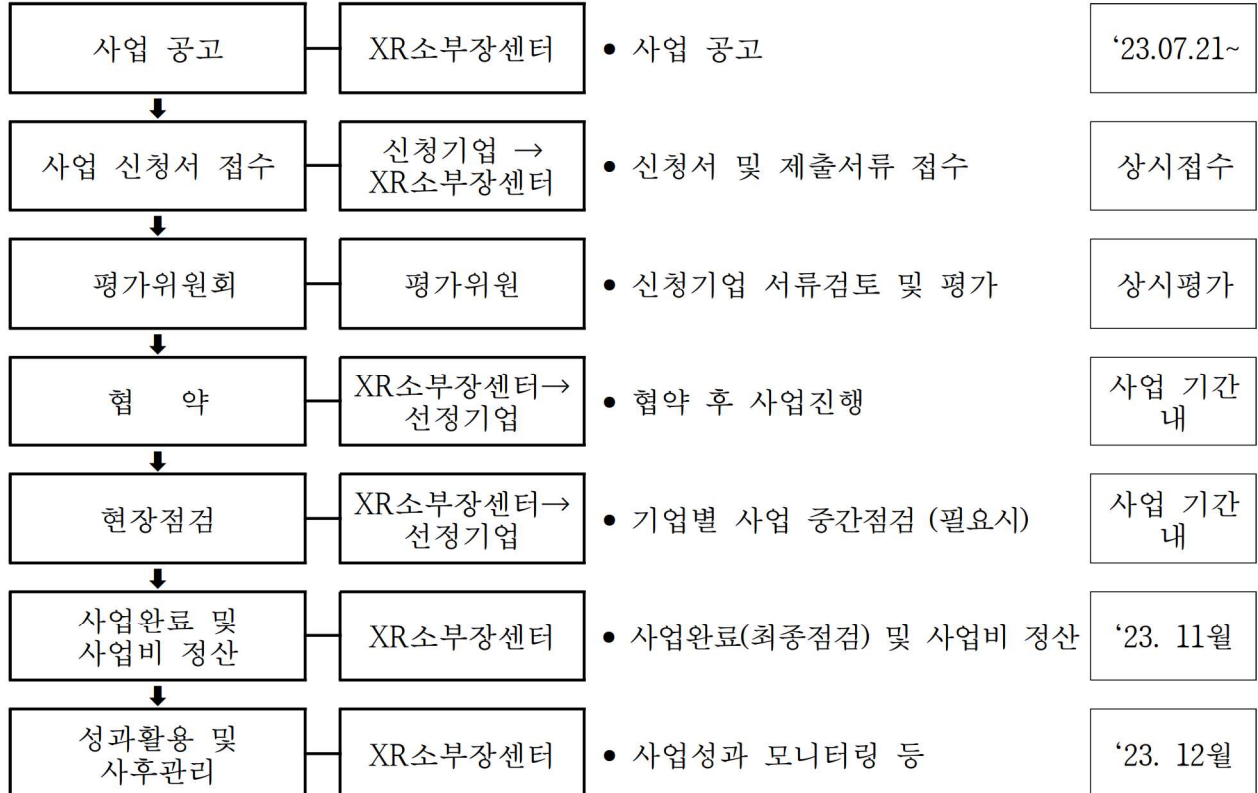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총 200백만원 이내

프로그램	하위 프로그램	세부 내용	지원규모
제품제작	실증 지원	XR디바이스와 연동 가능한 부품의 제작과 실증 (테스트베드)	2개사 (기업당 60백만원 내외)
마케팅 지원	① 국내외 전시 / 박람회 참가	· 부스 임차비, 제작비, 장치비 · 참가등록비, 운송비 통역비 지원	5개사 (기업당 16백만원 이내, 하위 프로그램(① ~ ④) 중 2개이상 선택해야함)
	② 홍보물 제작	·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동영상, · 브로슈어/인쇄물 등 제작	
	③ 광고 및 홍보 지원	· 브랜드 인지도 확보위한 언론보도 · 온라인 광고, 마케팅 지원	
	④ 시험·인증·특허	· 기술,제품 인증용 수수료, KOLAS 등 시험기관 수행시험, 국내외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행사 참가, 제작 완료, 시험·인증 등 발급 완료해야 함
비고) 적정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과제에 한하여 사전 공지 후 평가 진행 예정임.

3. 사업신청 및 접수

신청자격 : XR소재·부품·장비 기업

- 실증지원사업 기업은 테스트베드 운영할 XR디바이스 기업 명시할 것
- XR(VR, AR 등)관련 부품 기업을 지원하며 홀로그램 관련과제는 제외함

공고/접수 : 2023. 7. 21(금) ~ 상시공고 및 접수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eonyj@jbtp.or.kr)

신청(접수)요령

-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 후 최종 “*.zip” 파일명을
“XR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지원 유형별 구분)-(기업명)” 으로
변경하여 제출

No.	제출서류	비고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직인필수)	HWP
서식2	요약서	PDF
서식3	사업계획서	PDF
서식4	보안서약서	PDF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PDF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7	참여기업 자료제공 약약서	PDF
붙임1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PDF
붙임2	2022년 재무제표	PDF

[공통사항]

1. 제출서류 PDF 변환 시, 반드시 기본인쇄(1페이지 1쪽)로 설정요망(1페이지 2쪽 변환 불가)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
3. 각 항목별 서류 제출시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4. 제출서류의 미비,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SW융합팀 전유진 주임연구원

Tel: 063)856-8118 / E-mail: jeonyj@jbtp.or.kr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① 서면검토 : 제출서류,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② 선정평가 (서류심사)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으로 가 선정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③ 과제선정 : XR산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Pool을 이용하여 사업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과제를 평가하고 사업범위(신청분야별 지원 여부 등) 및 예산 등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기준

① 서류평가내용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 지원 기업 및 제품 해당 여부
-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② 평가항목 (서류심사)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1	정책부합성	o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10	25
		o 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	
		o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5	
2	기술경쟁력	o 사업 관련분야 기술·지식 보유 및 전문성	10	25
		o 기술 발전 동향 및 해당 기술의 사용 가치의 적정성	5	
		o 개발 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적정성	10	
3	사업경쟁력	o 시장규모 등 성장 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10	30
		o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10	
		o 해외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5	
		o 사업 손익 전망 및 손익분기점 분석의 타당성	5	
4	사업관리	o 일정, 산출물, 재무 등 일반 관리 분야	5	10
		o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3	
		o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2	
5	특성요소	o 사업 특성에 따른 추가 검토 사항	10	10
계				100

5. 기타 유의사항

□ 참고사항

- 제품 제작 완료보고서 제출(필요시 시제품 요청할 수 있음)
- 결과 보고 후 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 1월 25일 이후 확정분) 및 2023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부가가치세 기업 부담

□ 적용 규정 : 본 사업 관련 제반 업무 절차는 아래 규정 및 지침 등 적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선정평가 지원제의 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의 사항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의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거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5.)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하 “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